

조계종 “특별교구 종회의석 배정 노력” 합의

(재)대각회의 조계종 법인 등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계종과 대각회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이행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9월 1일 그간 조율해 온 ‘이행합의’에 비공개로 최종 합의했다.

비공개 이행합의서는 5개항으로 작성됐으며, 그 바탕에는 2000년 합의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합의는 △대각회를 종단 특별교구화하고 중앙종회의석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 △대각회에 포교원으로 등록된 사찰에 대해 재단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둔다 △유성 스님과 관련된 불사와 유적지 등 신규 사업은 대각회에 등록토록 한다 △법인관리법 부칙 2조 2항에 따라 종단에 법인 등록하면 대각회 사찰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분담금을 조정할 때는 대각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분담금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은 2000년 합의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계종과 대각회는 2000년 합의문

을 통해 용성문도회 소속 스님이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찰을 허용하고 대각회서 요구하는 특별교구화 등의 법인 처우 문제는 종헌 개정 시 다루도록 한다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양측이 비공개 결의를 했지만 숨길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법인관리법과 종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구화와 종회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특별교구화는 이미 2000년 합의에 있는 내용이고, 교구화가 되면 종회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각회에서 주장한 것”이라면서 “특별교구화와 관련된 사항은 종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총무원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같은 요구에 총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합의를 조율했던 대각회 이사회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항은 2000년도에 정대 스님과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그동안 종단이 지키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각회 분원장들은 법인관리법에 종단 등록 시 4년마다

주지인사고와 등 평가가 진행돼 창건주 위치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종단과는 대각회 이사들과 분원장 스님들이 의심되는 부분을 종령과 시행령에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일 양측 비공개 이행 합의

대각회 법인 등록 가속화

2년간 불이행시 파기 ‘미봉책’

타 법인들과 형평성 논란도

“2000년 합의 내용 기준한 것

선학원도 협의되면 적용 가능”

하지만 대각회 이사회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행합의서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대각회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법인 등록 조건으

로 합의 이행 시한을 2년으로 규정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기하기로 했다. 만약 이 같은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것이다.

분원장들도 우선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지만 잠재적인 반대여론도 많아 향후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8월 11일 열린 분원장 중진 스님 비상회의에서 이 같은 여론은 확인된 바 있다.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170여 분원 중 130여 분원이 반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반이 넘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다.

실제로 법명을 밝히기를 꺼리던 분원장 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하더라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다”면서 “일부 대각회 이사들이 야합할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또 다른 분원장 스님도 “개인적으로 조계종 승려로 30년 넘게 종단의 후원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약 대각회가 조계종에 법인 등록을 한다면 대각회를 하나

의 교구로 인정해야 한다. 종회의원 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행 합의를 지켜본 교계의 법인 관계자는 “대각회의 목적 사업 및 포교원 등록 유예라는 특혜에 대해 다른 중소 사찰 보유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법에 반영하지 않은 예외가 생기게 되어 법인관리법 도입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각회와의 이행합의 전례를 들어 여타 법인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법인관리법 본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은 바로 잡지 않고 법인관리법을 통한 종단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대형 법인들과 합의하는 것은 다른 중소 법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만 스님은 “이번 합의는 기존 합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신축성을 둔 것”이라며 “선학원 등 다른 법인으로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 종도로서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주열 ·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종교계, 자살예방 나선다

7대 종교·보건복지부 1일 자살예방캠페인 협약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계가 우리사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국종교인명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태왕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종교계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자승 스님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종교계가 앞장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살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종교계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

승 스님은 “협약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종교대표들은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도 진행했고,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사랑 지키기’ 7대 선언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각 종교대표들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사랑 지키기’ 7대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단은 9월 2일 중국 우루무치 천산 천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봉행했다. (사진 왼쪽부터)덕총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책특보단장 정년 스님과 참가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사진=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실크로드 순례단 세월호 추모제

2일 우루무치 천산 천지에서... “슬픔 벗어나길” 발원

8월 27일~9월 3일 순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령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충의 열사, 6.25 전쟁이라는 참화로 생명을 잃은 전 세계 참전 군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려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한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에 참가한 순례 대종은 9월 2일 중국 우루무치 천산 천지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봉행했다. 순례 대종은 거불 의식과 아미타불 정경,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으며, 노란 리본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순례단 지도법사 덕총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뜻깊은 영혼들과 일반인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들이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길 발원했다”면서 “여법하게

단을 차리지 못하고 약식으로 진행했으나 정성을 다해 기원했다. 중생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크로드 불교유적 순례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단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서안 법문사 진신보탑에서 입제식을 봉행했다.

설정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구법승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길은 나섰다”면서 “옛 선지식들이 걸어간 이 험로의 일부는 후학인 우리가 일부 순례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보려 한다”고 순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구법승들의 서역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답사한 순례단은 중국 서안의 출발해 천수의 맥적산 석굴, 난주의 병령사 석굴, 둔황의 유림굴·막고굴, 투르판 바제크리 석굴·명사산 등을 찾았다. 중국·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5면>

현대불교 지사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집한다

-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주수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관리부 서춘진 부장
 - 전 화: 02)2004-8204 팩 스: 02)737-0698
 - 이메일: cgseo@hyunbul.com

성명서

도산이 근래에 나를 표적으로 삼아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정계로 평생의 승려 신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조선원 판결문을 요약하면 청문회에 불참했고 봉원사와 태백 관음사 문제에 인정을 도용,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종단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벌금과 함께 41억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성결핍자의 참없는 작란으로 취급, 차지도외(置之度外)하러 했으나 신문을 본 사람들은 진실에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략하게나마 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1. 봉원사 관련 중단명의 부채문제**
봉원사와 직, 간접으로 관련된 종단 명의 부채는 세 종류다.
첫째, 2007년 4월 5일자 당시 환우(조상길) 주지와 운산 총무원장과의 합의로 봉원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한 46억건이다. 이 부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종단으로 되어있었으나 2010년 5월 28일 채무 이행을 봉원사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 6월 11일 상환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종단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2010년 재무를 봉원사로 전환할 당시 인정을 도용하여 회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때는 총무원장 인공, 봉원사 주지 일운, 화평씨연씨씨복 시경 순 세 사람이 연명으로 확인서만 제출 했을 뿐 은행에서 별도의 회의록을 요구한 적이 없어 인정도용주장은 허위다.
둘째, 2006년 4월 7일자로 이운산 총무원장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종단이름으로 대출하여 화광씨연씨 대표 신경순(납골당 2분의 1분 보유)에게 준 15억(신경순 말에 의하면 15억 중 신경순이 7억 7천을 사용하고 7억 3천은 운산스님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건은 순전히 운산과 신경순 개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로 봉원사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도 없다.
셋째, 2007년 6월 29일 납골당조경업자(주) 미래불 김규배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당시 이운산 총무원장(사단법인 이사장)이 보증해준 5억건이다. 위에서 적힌 봉원사 관련 부채는 누구와 합의 없이 운산스님 혼자 한 일로 봉원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 사람들은 봉원사 납골당과 관련된 개인 사업자라 개인사업자가 봉원사 일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다고 하여 그것이 봉원사 부채가 될 수는 없다. 운산스님은 종도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후일 총무원장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 20억의 빚이 40억이 되었다며 그 책임은 인공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돈이 종단공식부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출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대출한 돈이 종단 통장으로 들어와 종단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 둘 다 아니다. 대출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돈이 종단에 들어오거나 종단 일에 사용된 흔적도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채무는 종단이 공식채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후일 총무원장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 2. 태백 관음사 등기 이전 승인문제**
태백 관음사는 강원총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할로 지방총회의 결의와 총무원장과 신도회장의 요청에 의해 사찰은 그대로 두고 등기 명의를 사단법인에서 “한국불교태고종관음사”로 이전했을 뿐 재산을 처분하거나 없어진 게 아니다. 등기 변경과정에 필요한 서류(회의록)는 등락 이사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는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실무자가 이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허위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3. 초심원 정계는 원천 무효다.**
첫째, 기본적인 절차법(규정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
둘째, 소급인정은 무효다. 청문회 특별법을 만든 것은 2014년 3월 26일로 제정된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종단 부채 문제는 7, 8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나와는 무관하다)지만 과거의 사건을 이제야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의도적인 표적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과거 삼부기관장을 역임했거나 동방대학 학장을 지낸 종단 중진으로 징계를 당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분명한 표적 징계다.
- 4. 신문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지난 8월 30일 한국불교신문을 보면 내가 봉원사 주지 당시 납골당 봉안증서 800여장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것이 종단 부채발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비난성 기사가 실려 있다. 나의 봉원사 주지 재임기간은 1999년 ~ 2004년으로 2002년부터 납골당 시설공사가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2004년 12월 주지 임기 만료시 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당시 납골당이 미완의 상태에서 봉안증서를 발행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있어 나의 주지 재임 중에는 봉안증서를 한 장도 발행한 적이 없다. 신문에 게재된 바일동 이름으로 된 봉안증서는 내가 주지를 퇴임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문서로 나와는 무관하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동일자 신문은 내가 자필서신과 모 전직 총무원장을 찾아가 우리 일에 협조해주던 중증을 바꾸어 중정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이 또한 전혀 사실 무관하다. 이는 중증증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꾸며낸 말발이다.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는 모두 꾸며낸 거짓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특히 봉원사 불사로 종단이 손해를 입었으니 4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횡령무죄하여 대우할 가치가 없다. 봉원사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종단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부채 문제에선 문제이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봉원사가 책임질 문제이지 종단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 총무원장이 종단을 이용하여 봉원사 업자들과 어울려 부채를 거래한 것이 문제이지 이들이 봉원사 납골당 업자라고 해서 봉원사가 개인이 진 빚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 도산은 퇴출위기에 몰리자 수하들을 몰고 중증실에 난입하여 사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로회의 결의를 제기한 중증예회를 감금하고 위협하며 불운문서에 강제로 날인을 받아 내는 등 천안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분명한 탄핵 대상이다. 나는 이처럼 개남 없이 행동하는 도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년 9월 일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박 인 공